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1. 6 선고 2024가단881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현종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4. 10. 16.

판 결 선 고 2024. 11. 6.

주 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1, 2, 3번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23. 10.
6.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을 별지 목록 순번 1, 2, 3번 ‘해약실지급금’란 기재 각
돈의 범위 내에서,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4, 5번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2023. 10.
6. 체결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변경계약을 별지 목록 순번 4, 5번 ‘해약실지급금’란 기재 각
돈의 범위 내에서 각 취소한다.2. 원고에게, 피고 B는 14,066,812원, 피고 C는 2,065,84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채권자이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나. D는 2005.경부터 2014.경까지 사이에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순번 1, 2, 3번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1 보험계약’이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4, 5번 기재 보험계약을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1.경 D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	만료일자	적용 금리	연체 금리
1	2021. 6. 16.	5,000,000원	2024. 6. 16.	10.5%	13.5%
2	2021. 8. 18.	25,000,000원	2024. 8. 18.	10.5%	13.5%
합계		30,000,000원			

라. D는 2023. 9. 25. 이후로 이 사건 대출 이자를 연체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D에게 이자연체로 인해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기한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마. D는 2023. 10. 6.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1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B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1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2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 C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2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위 각 계약에 따라 이 사건 1, 2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변경되었다.

바. 이 사건 1, 2 변경계약이 체결된 2023. 10. 6. 기준, 이 사건 1, 2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의 해약실지급금 액수는 별지 목록 기재 '해약실지급금'란 기재와 같다.

사. D는 이 사건 1, 2 변경계약 당시 위 해약실지급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의 해지 등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에 관한 해약환급금채권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포함되고, 따라서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보험계약자 명의를 제3자 앞으로 변경하는 것은 해약환급금채권을 수령할 수 있는 지위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과 사이에 해약실지급금이 존재하는 이 사건 1, 2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고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의 지위를 이전한 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로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1, 2 변경계약 당시 피고들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92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1, 2 변경계약 이후 피고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현재 해약실지급금은 2023. 10. 6. 당시 해약실지급금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원물반환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대출채권의 2024. 7. 7. 기준 원리금이 33,024,13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 목록 각 ‘해약실지급금’란 기재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1, 2 변경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피고 B는 14,066,812원, 피고 C는 2,065,846원 및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형

별지